

문서관리번호	BRM-인사-A09
최초작성일	2024.04.01
최종수정일	2024.05.01
관리담당	인사총무팀

## (유)비알엠 공급사 행동규범

2024. 5.

## 목 차

1. 제 1장 총칙 .....	3
2. 제 2 장 윤리 .....	3
3. 제 3 장 환경 .....	4
4. 제 4 장 노동 및 인권 .....	4
5. 제 5 장 안전 및 보건 .....	6
6. 제 6 장 운영 시스템 .....	6
부칙 .....	8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 적】

(유)비알엠(이하 '회사')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는 경영활동에 행동규범을 내재화 하여 실질적인 공급망 ESG 경영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회사의 공급사와 그 하도급사(이하 '공급사')들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E(환경), S(노동 인권, 안전 보건, 동반성장 및 사회공헌, 품질경영), G(윤리 및 공정거래, 경영시스템)으로 구성하여 회사의 공급사 뿐만 아니라 공급사와 거래하는 2~3차 공급사 모두를 포함한다.

## 제 2 장 윤리

### 제 3 조 【투명경영】

공급사의 임직원은 뇌물수수, 횡령, 청탁, 알선 등을 해서는 아니되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는 안된다.

### 제 4 조 【불공정 거래 방지】

1. 공급사의 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며 상생관계를 추구한다.
2. 공급사는 시장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공급사는 부정하게 정보를 획득한 경우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

### 제 5 조 【정보보호】

1. 공급사는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허가나 승인 없이 보관이나 사용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공급사는 거래업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통해 보호해야 한다.

### 제 3 장 환경

#### 제 6 조 【환경경영체계】

공급사는 사업장의 환경영영을 위해 현황 점검 및 성과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프로세스를 관리하도록 한다.

#### 제 7 조 【온실가스 관리】

1. 공급사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2. 공급사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제 8 조 【용수/폐수 관리】

1. 공급사는 용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정기적으로 설비를 점검한다.
2. 공급사는 용수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제 9 조 【폐기물 관리】

1. 공급사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2. 공급사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자체적으로 실적을 관리한다.

### 제 4 장 노동 및 인권

#### 제 10 조 【차별금지】

1. 공급사는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장애, 나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다.

2. 공급사는 임직원 채용시 직무수행과 무관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 제 11조 【복리후생】

1. 공급사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를 운영한다.
2. 공급사는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며 법률에서 제시하는 의무 교육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 제 12조 【인도적 대우】

1. 공급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
2. 공급사는 업무시간 이외에 불필요한 지시를 하지 않으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 13조 【근로시간】

1. 공급사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초과 근무의 경우 정당한 수당을 지급한다.
2. 공급사는 임직원에게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한다.

#### 제 14조 【노동법 준수】

1. 공급사는 법률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금지해야 한다. 아동노동과 관련된 위반사항 발생시 거래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공급사는 법률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금지해야 하며, 위반 사항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제 15조 【결사의 자유】

1. 공급사는 임직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를 보장한다.

2. 공급사는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제 5 장 안전 및 보건

### 제 16조 【안전·보건체계】

1. 공급사는 안전 및 보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 절차, 결과 등의 체계를 운영한다.
2. 공급사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운영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허가 취득 및 유지해야 한다.

### 제 17조 【설비 등의 안전】

1. 공급사는 사업장 내 안전에 유의해야 할 기계나 설비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
2. 공급사는 사업장 내 설비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장치 및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 제 18조 【사고 관리】

1. 공급사는 산업재해나 질병 발생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 공급사는 산업재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원인 파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제 19조 【보건】

1. 공급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공급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식당, 휴게공간 등을 제공하고 해당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제 6 장 운영 시스템

#### 제 20조 【행동규범 공유】

1. 공급사는 행동규범과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 의지를 사내게시판 및 그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
2. 공급사는 행동규범과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 의지를 대내·외로 전파해야 한다.

#### 제 21조 【사내소통】

공급사는 행동규범의 사항과 관련 법률 및 규정 제도에 대해 임직원에게 전파 및 교육을 실시한다.

#### 제 22조 【정보관리】

공급사는 행동규범에 명시되는 각 분야의 현황 및 문제점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 제 23조 【신고제도 운영】

1. 공급사는 임직원이 행동규범 각 분야의 위반 사실을 제보하는 경우 관련 사실을 처리할 제도를 운영한다.
2. 공급사는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 제 24조 【규범 준수】

1. 공급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적절한 문서로 관리하며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한다.
2. 공급사는 본 행동규범을 적절하게 준수하기 위한 실행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 부 칙

### 제 1 조 【시행령】

이 규정은 2024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